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7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조 국·차규근·김준형

신장식 · 김선민 · 김재원

정춘생 • 박은정 • 서왕진

황운하 · 강경숙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 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 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 및 제30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때에는 處罰하지"를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의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처벌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② 제307조제1항의 행위 및 제309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인"이란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11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1조(모욕)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3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307條(名譽毀損) ① 公然司 事 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 의 罰金에 處한다.

② 公然히 虚偽의 事實을 摘示 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 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 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9條(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毀 損)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 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 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 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 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 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10條(違法性의 阻却) 第307條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① 제307

제307조(명예훼손) ① 비방할 목 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 손) ① 신문, 잡지 기타 출판 물, 라디오, 텔레비전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項의 行為가 眞實한 事實로 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 제311조(모욕) 비방할 목적으로 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 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 ① 第308條外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의 행 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 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처벌하지----.

② 제307조제1항의 행위 및 제 309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인"이 란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 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 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 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3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